

군포도시공사 제6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

2023년 11월 16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21 호

군포도시공사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0조(임금 및 수당의 지급) 제2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위험근무수당

제30조 제2항의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

구 분	지급금액	지급시기	비 고
조 정 수 당	(생략)		
가 족 수 당	(생략)		
자녀학비보조수당	(생략)		
시간외 근무수당	(생략)		
야 간 근무수당	(생략)		
휴 일 근무수당	(생략)		
연 차 수 당	(생략)		
퇴 직 급 여 금	(생략)		
장 려 수 당	(생략)		
운 전 수 당	(생략)		
위험근무수당	월50,000원	매 월	가스 또는 주유(충전) 안전관리자
이	하	생	략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경 영 지 원 부
입 안	직 위 성 명 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
안	직 위 성 명 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 심 영 주 (3 9 0 - 7 6 4 3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0조(임금 및 수당의 지급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(신설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0조(임금 및 수당의 지급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위험근무수당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

[별표 2] <개정 2020.1.17.><개정 2020. 5. 6><개정 2023. 3. 14.>

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

구 분	지급금액	지급시기	비고
조정수당	(생략)		
가족수당	(생략)		
자녀학비보조수당	(생략)		
시간외근무수당	(생략)		
야간근무수당	(생략)		
휴일근무수당	(생략)		
연차수당	(생략)		
퇴직급여금	(생략)		
장려수당	(생략)		
운전수당	(생략)		
위험근무수당	<신설>		
이	하	생	략

개 정 안

[별표 2] <개정 2020.1.17.><개정 2020. 5. 6><개정 2023. 3. 14.>

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

구 분	지급금액	지급시기	비고
조정수당	(생략)		
가족수당	(생략)		
자녀학비보조수당	(생략)		
시간외근무수당	(생략)		
야간근무수당	(생략)		
휴일근무수당	(생략)		
연차수당	(생략)		
퇴직급여금	(생략)		
장려수당	(생략)		
운전수당	(생략)		
위험근무수당	월50,000원	매 월	가스 또는 주유(충전) 안전관리자
이	하	생	략